

보도 일시	2022.3.28.(월) 석간 2022.3.28.(월) 06:00	배포 일시	2022. 3. 25.(금) 14:00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성원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 장용호 (044-200-5614)

공공양식면허 신설로 어촌활력 불어 넣는다

- 공공양식면허 신설,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(3. 28~5. 9)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8일(월)부터 5월 9일(월)까지 43일 간 입법예고 한다.

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,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‘어촌지역 활성화 대책’을 수립하였고, 이번에 그 후속 조치로 ‘공공양식업 면허’ 신설,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.

우선, ‘공공양식장’을 새롭게 정의하여, 공공기관도 귀어·귀촌 활성화,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또한,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해 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그 밖에도 후계어업인, 청년어업인, 그리고 귀어·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양식면허 발급 시 고려하도록 하였다.

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.”라고 하면서, “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귀어인 등 새로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, 자금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번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‘법령바다/입법예고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, 단체는 2022년 5월 9일(월)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, 해양수산부 누리집(www.mof.go.kr)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. 해양수산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, 차관·국무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.

<의견제출처>

- *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
(전화 : 044-200-5615)
- * 해양수산부 누리집 : www.mof.go.kr → ‘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’
- *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: 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

☐ 정의 조항 신설(안 제2조)

- “공공 양식장”을 귀어·귀촌 활성화,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한 양식장으로 규정

☐ 면허의 조건 추가 신설(안 제14조)

- 후계어업인, 청년어업인, 귀어·귀촌인이 양식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허조건 부여와 관련 법률 근거 신설

☐ 공공양식면허 신설(안 제18조의2)

- 공공면허의 면허권자를 해수부장관으로 하고 대상수면, 면허기간,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

☐ 면허의 심사·평가 배제(안 제25조)

- 면허심사·평가('25년 시행) 대상에서 공공양식업면허와 내수면양식업면허 제외

☐ 일부 양식업권의 임대 허용(안 제32조)

- 신규인력 유입과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불가능한 양식면허의 임대차 사유 확대
 - 어촌계가 귀어인, 어업후계자, 청년 등을 적정비율이상 구성한 경우, 귀어 확대를 위하여 면허권을 공공기관에 임대하는 경우 등에 한해 임대차 제한 완화



가두리양식시설 1



가두리양식시설 2



굴 양식장